

관세연구 24-01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 관리를 위한 수입요건 면제규정의 활용방안

2024. 10.

정다운·이재선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다 운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재 선 특수전문직 2급

목 차

I. 서론	1
II. 해외직구 개요	4
1. 해외직구 현황	4
가. 해외직구 규모	4
나. 해외직구 주요 품목	7
2. 해외직구물품의 통관	9
가. 통관 방법	9
나. 통관 현황	17
III. 해외직구물품의 수입요건 및 면제	23
1. 수입요건 관련 법령	23
가. 무역 및 통관 관련 법령	24
나. 물품 관련 개별 법령	35
2.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의 수입요건 면제	45
가.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의 수입요건 면제 근거	45
나.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 실태	50
다.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에 대한 대책 현황	53

IV. 해외직구 반입 위해물품 관리를 위한 수입요건 면제규정의 활용	58
1.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의 관리 방향	58
가. 소비자 후생과의 균형	58
나. 실효성의 확보	59
다. 소비자 인식 제고	61
2. 위해물품 관리를 위한 수입요건 면제규정의 활용	62
가. 요건면제의 확인	62
나. 요건면제 기준의 강화	66
3. 수입요건 면제규정 활용을 위한 개선사항	70
가. 중복·상충되는 요건면제 규정 정리	70
나. 통관절차와 요건면제 절차의 일치	73
다. 요건면제 대상과 요건 비대상 구분	75
라.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확대	77
 참고문헌	 79

표 목차

〈표 II-1〉 해외직구 거래액, 전년 대비 증감액·률(2017년~2023년)	4
〈표 II-2〉 주요국별 해외직구 거래액(2017년~2023년)	6
〈표 II-3〉 해외직구 주요 품목(2017년~2023년)	7
〈표 II-4〉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2014년~2023년)	18
〈표 II-5〉 운송방식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2014년~2023년)	21
〈표 II-6〉 특송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방법(2014년~2023년)	21
〈표 III-1〉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면제 대상	25
〈표 III-2〉 「통합공고」의 적용 법령	31
〈표 III-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제품안전관리	36
〈표 III-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41
〈표 III-5〉 「화장품법」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의무	44
〈표 III-6〉 소액면세 자가사용 인정 기준	48
〈표 III-7〉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물품 안전성검사	51
〈표 III-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54

그림 목차

[그림 II-1] 해외직구 거래액 추이(2017년~2023년)	5
[그림 II-2] 주요국별 해외직구 거래액 비중(2017년 vs 2023년)	6
[그림 II-3] 해외직구 주요 품목 비중(2017년 vs 2023년)	8
[그림 II-4]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추이(2014년~2023년)	18
[그림 II-5] 전자상거래 물품 및 전자상거래 외 물품 수입건수 추이 (2014년~2023년)	19
[그림 II-6] 전자상거래 물품 및 전자상거래 외 물품 수입건수 비중 (2014년~2023년)	20
[그림 II-7] 특송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방법별 건수 비중(2014년~2023년) ...	22

I. 서론

-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물품에서 소비자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음
 - 인천본부세관은 2024년 4월 7일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함¹⁾
 - 또한 2024년 4월 8일 서울시는 해외 플랫폼 판매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검사결과 8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힘²⁾

- 이러한 보도에서 말하는 안전기준치 초과, 부적합 판정 등은 해외 플랫폼 판매물품이 국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절차, 사양,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 수입물품은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준 등을 충족하였음을 관련 기관에서 승인·허가·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기준 등을 수입요건이라고 함
 - 수입요건은 「대외무역법」이나 수입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 해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해외직구하는 물품은 이러한 수입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될 수 있음
 - 수입요건을 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이나 개별 법령은 대부분 자가사용을 위한 물품에 대해 수입요건을 면제하거나 수입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특히 개별 법령의 수입요건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고시하는 「통합공고」에서 자가사용 전자상거래 구매물품을 요건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합공고」의 적용 범

1) 관세청, 「알리·테무서 구입한 내 귀걸이가 혹시 카드뮴 덩어리?」, 보도자료, 2024. 4. 7.

2) 서울특별시, 「유해물질 범벅 해외직구 공습...서울시, 소비자 보호 나선다」, 보도자료, 2024. 4. 8.

령의 대상이 되는 해외직구물품은 자가사용 시 수입요건이 면제됨

- 소량의 자가사용 물품은 소비자 건강·위생·안전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낮으므로 수입 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없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적고, 수입자가 사용자이므로 수입신고자료를 통한 사용자의 파악도 용이함
- 그러나 해외 플랫폼의 우리나라 진출이 활발해지고 해외직구 규모가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건강·위생·안전 위협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위해물품이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경우 다수의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해외직구물품은 대부분 수입신고 없이 통관되므로 구매자의 추적 또한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등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수입통관 시 위해물품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발표되고 있는 대책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주요 구매물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물품을 수입·사용한 후에 시행되는 방안 위주임
 -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수입통관되는 단계에서 위해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관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절차를 개선하여 해외직구물품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³⁾
 - 우선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명시하여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 신고 및 물품검사를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세청 또는 세관에 등록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관세청장이 이들에게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 7. 25., pp. 102~104

-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효율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직접적으로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방안은 아님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요건과 관련된 규정이 아니라 특별통관의 대상, 방법을 구체화하고 특별통관의 적용요건으로 전자상거래업체의 등록을 의무화 함
 - 또한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정보를 수입 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유통 후 위해 사실이 발견된 물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로 주로 수입되는 품목의 수입요건 및 면제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해외직구의 현황과 주요 품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수입요건 및 면제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활용하기 위해 개선·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해외직구물품의 현황, 위해 실태 및 대책 등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위해물품 관리방안의 방향, 이에 적합한 방안 및 해당 방안의 실현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함
 - 제Ⅱ장에서는 해외직구의 규모, 주요 품목, 해외직구물품의 통관방법 및 현황을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의 수입요건 및 면제규정을 검토한 후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살펴봄
 - 제Ⅳ장은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요건 면제규정을 활용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규정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함

II. 해외직구 개요

1. 해외직구 현황

가. 해외직구 규모

- 해외직구는 해마다 전년 대비 10%를 초과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5조 원을 돌파한 거래액이 2023년에는 6조원을 넘어섬
- 2018년 약 32.5%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기록한 해외직구 거래액은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지만 2023년 약 12.4%로 여전히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전년 대비 증가액은 약 3천억원이었으나 2018년 이후 매년 약 7천억원가량 증가하여 2023년에는 약 6조 6,819억원이 해외직구를 통해 거래됨

〈표 II-1〉 해외직구 거래액, 전년 대비 증감액·률(2017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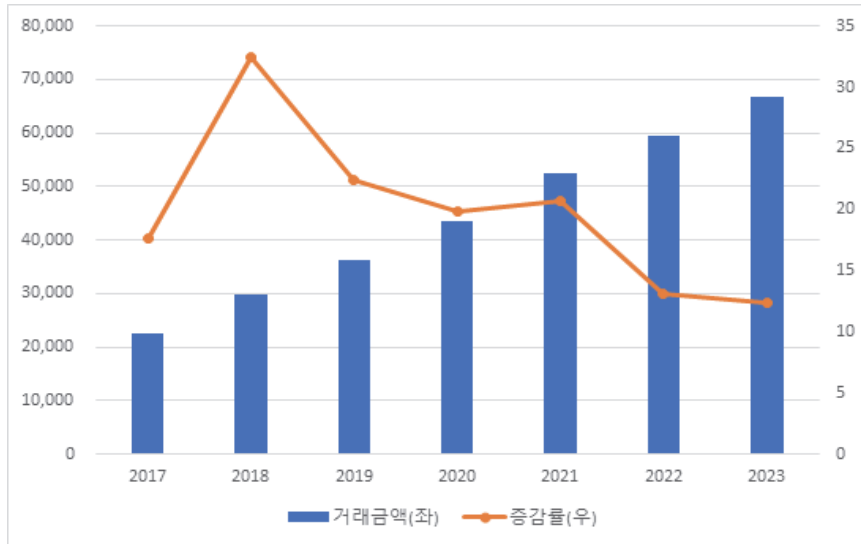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거래금액	22,436	29,717	36,360	43,557	52,574	59,454	66,819
증감액	3,357	7,281	6,643	7,197	9,017	6,880	7,366
증감률	17.6	32.5	22.4	19.8	20.7	13.1	12.4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E1009&conn_path=13, 검색일자: 2024. 7. 17.

[그림 II-1] 해외직구 거래액 추이(2017년~2023년)

(단위: 억원, %)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E1009&conn_path=I3, 검색일자: 2024. 7. 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특히 중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거래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에서의 해외직구는 감소하는 추세임
 - 2023년 중국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거래액은 약 3조 2,273억 원으로 이는 전체 해외직구 거래액의 약 48%를 차지하는 규모임
 - 2017년 중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거래액의 비중은 약 11.5%에 불과했으나 매년 약 4~50%가량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3년 비중이 약 48%로 증가함
 - 반면 미국의 2023년 해외직구 구매액 비중은 약 27.7%로 2017년 약 57.4%에서 절반 이상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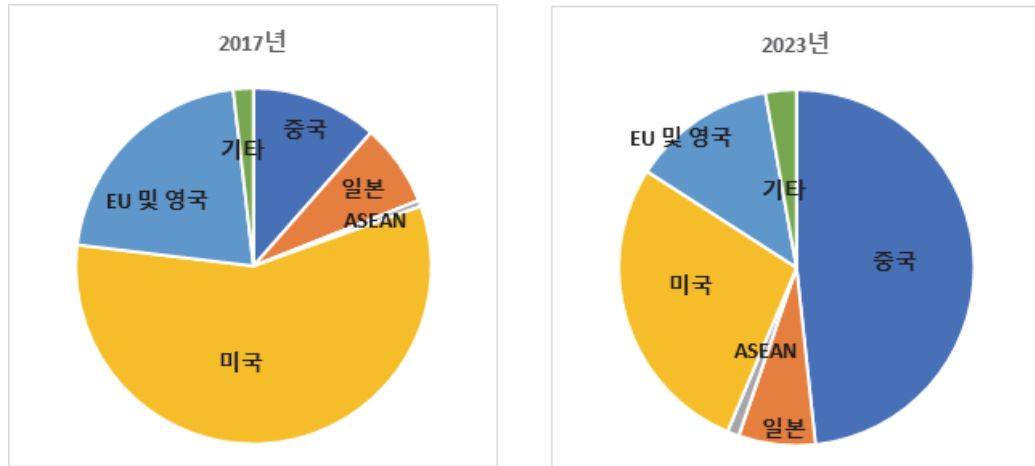
〈표 II-2〉 주요국별 해외직구 거래액(2017년~2023년)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국	거래액	2,581	5,082	6,624	10,399	14,327	21,074	32,273
	비중	(11.5)	(17.1)	(18.2)	(23.9)	(27.3)	(35.4)	(48.3)
일본	거래액	1,679	1,972	2,186	2,408	3,322	4,254	4,669
	비중	(7.5)	(6.6)	(6.0)	(5.5)	(6.3)	(7.2)	(7.0)
ASEAN	거래액	126	109	150	328	666	858	722
	비중	(0.6)	(0.4)	(0.4)	(0.8)	(1.3)	(1.4)	(1.1)
미국	거래액	12,869	15,623	17,686	18,577	21,050	19,992	18,524
	비중	(57.4)	(52.6)	(48.6)	(42.6)	(40.0)	(33.6)	(27.7)
EU 및 영국	거래액	4,770	6,211	8,603	10,478	11,463	11,361	8,741
	비중	(21.3)	(20.9)	(23.7)	(24.1)	(21.8)	(19.1)	(13.1)
합계		22,436	29,717	36,360	43,557	52,574	59,454	66,819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E1009&conn_n_path=13, 검색일자: 2024. 7. 17.

[그림 II-2] 주요국별 해외직구 거래액 비중(2017년 vs 2023년)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E1009&conn_n_path=13, 검색일자: 2024. 7. 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해외직구 주요 품목

-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소비자는 의류 및 관련 상품을 해외직구로 가장 많이 구매하였으며, 음·식료품, 가전·전자·통신기기가 그 뒤를 이음
- 2023년 약 3조 699억원가량의 의류 및 관련 상품이 해외직구로 구매되었고, 음·식료품은 약 1조 5,017억원,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약 4,213억원 구매됨
- 그 외에 생활·자동차용품, 화장품도 매년 천억원 이상이 해외직구를 통해 거래되었음
- 특히 스포츠·레저용품의 경우 2017년 약 393억원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되었으나 2023년에는 그 거래액이 2,543억원으로 증가하였음

〈표 II-3〉 해외직구 주요 품목(2017년~2023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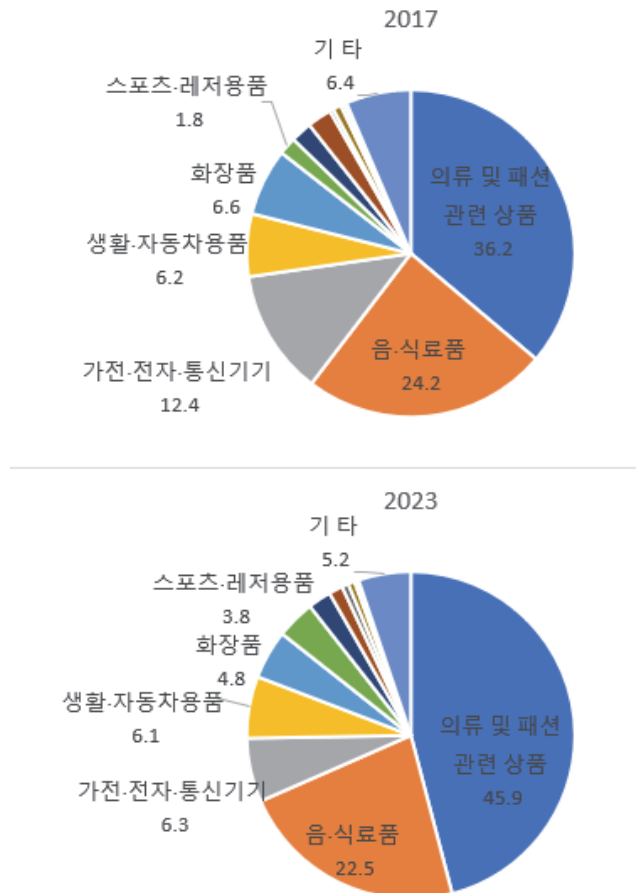
품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8,116	10,823	14,082	16,581	21,444	26,400	30,699
음·식료품	5,428	6,684	9,112	11,213	13,412	14,719	15,017
가전·전자·통신기기	2,773	4,514	4,630	3,924	3,674	3,374	4,213
생활·자동차용품	1,389	1,646	1,845	2,957	3,170	3,179	4,076
화장품	1,488	1,656	1,936	2,241	2,566	2,675	3,226
스포츠·레저용품	393	532	646	1,003	1,655	2,005	2,543
컴퓨터 및 주변기기	466	648	630	776	862	1,020	1,529
아동·유아용품	541	636	643	787	915	968	918
사무·문구	84	120	163	220	268	348	436
서적	182	213	224	339	465	441	428
음반·비디오·악기	72	91	87	101	128	128	180
농축수산물	66	64	50	113	230	137	110
기타	1,438	2,091	2,315	3,304	3,785	4,060	3,444
합계	22,436	29,717	36,360	43,557	52,574	59,454	66,819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E1009&conn_path=13, 검색일자: 2024. 7. 17.

- 해외직구 주요 품목의 거래액은 2023년 기준 전체 해외직구 거래액의 약 95%를 차지하며, 그중 의류 및 관련 물품의 비중은 약 46%에 해당함

- 음·식료품, 생활·자동차용품, 화장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아동·유아용품의 비중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음
- 한편 2023년 가전·전자·통신기기의 비중은 2017년 대비 약 6.1%p 하락한 약 6.3%로 나타남
- 반면 2017년 전체 해외직구 거래액의 약 1.8% 수준이었던 스포츠·레저용품의 경우 2023년 약 3.8%까지 증가함

[그림 II-3] 해외직구 주요 품목 비중(2017년 vs 2023년)
(단위: %)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E1009&conn_path=I3, 검색일자: 2024. 7. 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해외직구물품의 통관

가. 통관 방법

-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직접 구매 및 수입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에 포함되는 개념임
 - 전자상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함⁴⁾
- 「관세법」에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게 함에 따라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고시함⁵⁾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⁶⁾
- 따라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해당 고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특송물품 또는 우편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은 특송 또는 우편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될 수 있으며, 해외직구물품 또한 이러한 운송방법에 따라 수입통관 방법 및 절차가 달라짐
- 「관세법」은 특송품, 우편물에 대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⁷⁾ 관련 조항 및 고시를 마련하고 있음
 - 특송품은 「관세법」의 특별통관 조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⁸⁾ 이와 관련한 사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함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5) 「관세법」 제254조 제1항

6)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조

7) 「관세법」 제241조 제2항

8) 「관세법」 제254조의2

- 우편물 통관은 「관세법」 제256조 내지 제261조에 따르며, 우편물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함
- 이러한 고시에서 정한 수입통관 절차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외직구물품에도 적용됨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상의 통관절차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것과 동일함
 - 또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1)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통관

- 특송물품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으로⁹⁾ 우리나라는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서 탁송품과 특송물품을 혼용하고 있음
 - 다만 특송물품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장이 인정한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하는 것에 한함¹⁰⁾
 - 특송업체란 국제무역선·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임¹¹⁾
- 특송물품은 가격에 따라 수입통관 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물품 또한 가격으로 수입신고 여부 및 절차가 결정됨
 - 특송물품의 수입통관 방법은 가격에 따라 수입신고 생략(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로 구분됨

9)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

10) 「관세법」 제254조의2 제6항

11)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호

가) 목록통관

-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¹²⁾
- 한-미 FTA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에 적용됨

- 그러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함¹³⁾
-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¹⁴⁾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 표 6의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13)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
 14)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물품수신인은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할 수 있음¹⁵⁾
 -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함
 -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나) 간이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한-미 FTA 경우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음¹⁶⁾
 - 간이신고 특송물품을 수입통관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 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함
 -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간이신고 배제 대상 물품은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함¹⁷⁾

1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16)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17)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

○ 간이신고가 배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¹⁸⁾

- 목록통관 배제 물품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 추천이 필요한 물품
-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관세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다) 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특송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함¹⁹⁾

○ 수이신고는 P/L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 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전자 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함²⁰⁾

-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 신고 시 제출)

18)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
 19)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20)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가격신고서(해당 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함)
- 선하증권 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 물품에 한함)
-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 물품에 한함)
-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
-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 물품에 한함)
-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 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양식용 해당 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 물품에 한함)

2) 전자상거래 우편물 통관

- 전자상거래 우편물 또한 특송물품과 마찬가지로 물품가격에 따라 수입통관방법이 결정되지만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특송물품과 상이함
 - 우편물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현장면세통관, 간이통관 및 현장과세통관, 수입신고로 구분되어 수입통관됨

가) 현장면세통관

- 현장면세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없이 곧바로 면세로 통관하는 것으로 다음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적용됨²¹⁾

21)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7호 및 제8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 관세 및 내국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우편물
- 수취인이 현장면세통관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수입신고 하려는 경우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음²²⁾
 - 수입신고는 해당 우편물이 현장면세통관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함
 -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를 위해 수취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나) 간이통관 및 현장과세통관

-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으로 다음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적용됨²³⁾
 -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
-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한 사실 등을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관우체국장은 수취인에게 통지해야 함²⁴⁾
 -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장에게 우편물이 간이통관대상이라는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함

22)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23)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24)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내지 제2항

-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이 간이통관대상이라는 사실과 간이통관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함
- 통지를 받은 수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²⁵⁾
 -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 전자통관시스템, 직접 방문 제출, 팩스 송부,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 한편,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통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세관장으로부터 부과지 받아 현장면세통관할 수 있음²⁶⁾
 - 현장면세통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편물에 적용됨
 - 현품,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 우편물목록 등을 확인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물품
 - 다만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 우편물은 제외함
-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및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²⁷⁾
 - 세관장은 부과지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세액을 입력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함
 - 통관우체국장은 세관장이 통보한 세액을 수취인으로부터 수납한 후 우편물을 교부해야 하며, 수납한 관세 등은 세관장 세입금 계좌로 납입해야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간이통관 및 현장과세통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으로 간주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²⁸⁾

25)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3항

26)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27)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 수취인이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우편물
- 세관장이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지하였으나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을 요청한 우편물

다) 수입신고

- 현장면세통관, 간이통관 및 현장과세통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²⁹⁾
 -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나. 통관 현황

1)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현황

- 특송 또는 우편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2023년 약 1억 3,144만건, 약 53억달러가 수입되었음
 - 2014년 약 1,553만건이었던 수입건수는 2023년까지 약 8.4배 증가하였으며,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최근 10년간 약 3.4배가 증가함

28)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29)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표 II-4〉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2014년~2023년)

(단위: 천건, 백만달러)

구분	전체 수입건수 ¹⁾	전체 수입금액	전자상거래 수입건수 ²⁾	전자상거래 수입금액	전자상거래 외 수입건수 ³⁾	전자상거래 외 수입금액
2014	22,891	526,084	15,534	1,551	7,357	524,533
2015	23,525	437,214	15,846	1,529	7,679	435,685
2016	25,280	406,912	17,380	1,626	7,900	405,286
2017	31,908	479,365	23,595	2,114	8,313	477,251
2018	40,718	536,381	32,258	2,759	8,460	533,622
2019	51,439	504,635	42,991	3,146	8,448	501,489
2020	72,006	469,208	63,577	3,757	8,429	465,451
2021	97,579	617,069	88,383	4,663	9,196	612,406
2022	105,187	733,485	96,124	4,730	9,063	728,755
2023	141,132	645,314	131,446	5,282	9,686	640,032

주: 1) 전체 수입건수(금액) = 일반 수입건수(금액) + 목록통관 건수(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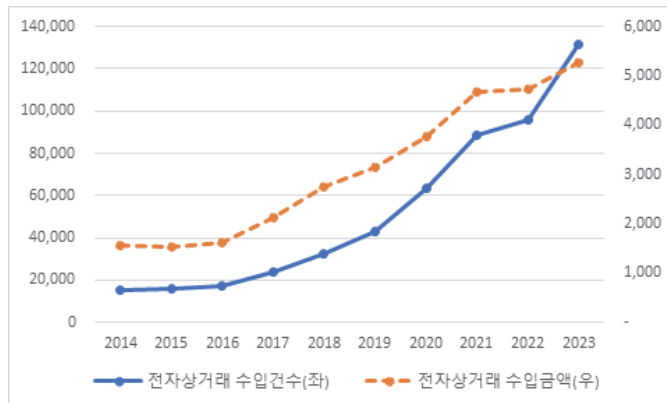
2) 전자상거래 수입건수(금액) = 목록통관 건수(금액) + 특송 EDI 수입건수(금액) + 우편물 EDI 수입건수(금액)

3) 전자상거래 외 수입건수(금액) = 전체 수입건수(금액) - 전자상거래 수입건수(금액)

자료: 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05, 검색일자: 2024. 5. 16.;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7b5ilzmSn7AGCQwoWIUNGDApelJjsBYT84h2k4g_.node11?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II-4〉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추이(2014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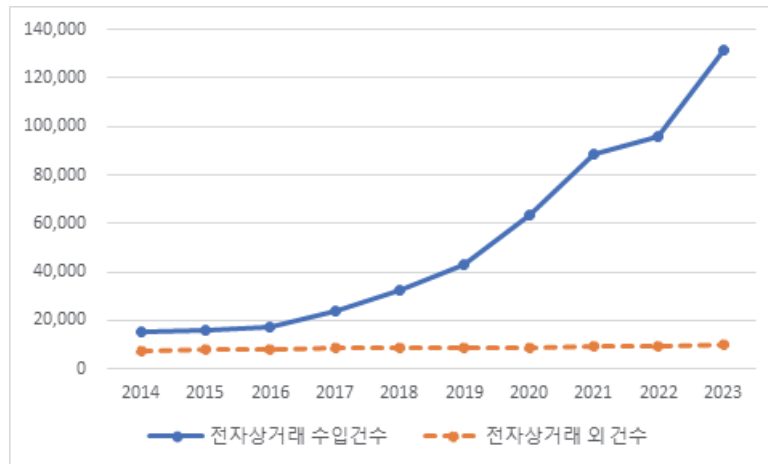
(단위: 천건, 백만달러)



자료: 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05, 검색일자: 2024. 5. 16.;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7b5ilzmSn7AGCQwoWIUNGDApelJjsBYT84h2k4g_.node11?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특히 전자상거래 수입건수의 경우 전자상거래 물품 외의 수입건수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전자상거래 물품을 제외한 수입건수는 2014년 약 735만건에서 2023년 약 968만건으로 1.3배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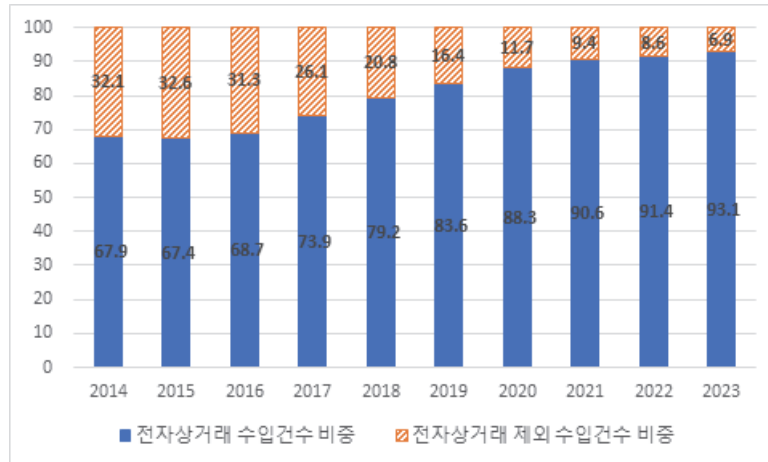
[그림 II-5] 전자상거래 물품 및 전자상거래 외 물품 수입건수 추이(2014년~2023년)
(단위: 천건)



자료: 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05, 검색일자: 2024. 5. 16.;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7b5ilzmSn7AGCQwoWIUNGDApelIJsBYT84h2k4g_.node11?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건수는 2023년 기준 전체 수입건수의 약 93.1%를 차지하며, 이는 2014년 대비 약 25.2%p 증가한 수치임
-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건수 비중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80%를, 2021년에는 90%를 넘어섰음

[그림 11-6] 전자상거래 물품 및 전자상거래 외 물품 수입건수 비중(2014년~2023년)
(단위: %)



자료: 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05,
검색일자: 2024. 5. 16.;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7b5ilzmSn7AGCQwoWIUNGDApellJsBYT84h2k4g_.node11?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운송방식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현황

- 전자상거래 물품은 거의 대부분이 특송을 통해 수입되며, 우편을 통해 수입되는 경우는 미미한 수준임
 - 다만 수입신고되지 않고 현장통관되는 우편물은 관세청 통계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우편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지 않음
- 2023년 기준 특송 전자상거래 물품은 약 1조 3,144만건, 약 52억 78백만달러가 수입되었으며, 우편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약 3천건, 약 4백만달러가 수입됨
 - 특송 전자상거래 물품은 최근 10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우편 전자상거래 물품은 약 2~4천건, 약 3~8백만달러 수준을 유지함

〈표 II-5〉 운송방식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2014년~2023년)

(단위: 천건, 백만달러)

구분	특송(목록통관 및 EDI)		우편(EDI) ¹⁾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15,531	1,545	3	6	15,534	1,551
2015	15,842	1,521	4	8	15,846	1,529
2016	17,377	1,622	3	4	17,380	1,626
2017	23,592	2,110	3	4	23,595	2,114
2018	32,255	2,755	3	4	32,258	2,759
2019	42,988	3,143	3	3	42,991	3,146
2020	63,575	3,754	2	3	63,577	3,757
2021	88,380	4,658	3	5	88,383	4,663
2022	96,120	4,725	4	5	96,124	4,730
2023	131,443	5,278	3	4	131,446	5,282

주: 1) 현장통관된 우편물은 통계에 집계되지 않음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sessionId=7b5ilzmSn7AGCQwoWIUNGDApellJsBYT84h2k4g_.node1?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 특송 전자상거래 물품을 통관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3년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된 경우가 수입건수 기준으로 약 73.7%를 차지함
- 목록통관으로 수입통관된 전자상거래 물품의 비중은 2015년 약 57.2%로 50%를 넘었으며 2020년에는 60%를, 2023년에는 70%를 넘었음

〈표 II-6〉 특송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방법(2014년~2023년)

(단위: 천건,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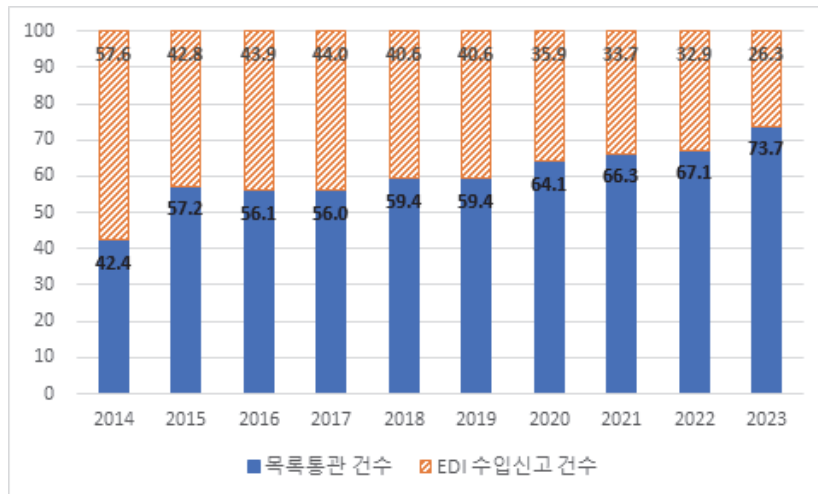
구분	목록통관		EDI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6,588	570	8,942	975	15,530	1,545
2015	9,065	715	6,777	806	15,842	1,521
2016	9,763	719	7,632	915	17,395	1,635
2017	13,217	887	10,375	1,223	23,592	2,110
2018	19,158	1,179	13,097	1,576	32,255	2,755

〈표 II-6〉의 계속

구분	목록통관		EDI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25,549	1,292	17,439	1,851	42,988	3,143
2020	40,722	1,575	22,853	2,179	63,575	3,754
2021	58,553	1,975	29,827	2,683	88,380	4,658
2022	64,500	2,116	31,620	2,609	96,120	4,725
2023	96,929	2,742	34,514	2,536	131,443	5,278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7b5ilmSn7AGCQwoWIUNGDApelIjsBYT84h2k4g_.node11?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그림 II-7] 특송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방법별 건수 비중(2014년~2023년)
(단위: %)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7b5ilmSn7AGCQwoWIUNGDApelIjsBYT84h2k4g_.node11?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Ⅲ. 해외직구물품의 수입요건 및 면제

1. 수입요건 관련 법령

- 외국물품은 국내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절차 등을 충족하여야 수입될 수 있으며, 수입 시 갖추어야 하는 기준, 절차 등을 수입요건이라고 함
 - 즉 수입요건이란 국내 법령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요건으로 수입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승인·허가 확인을 받아야 함

- 수입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무역 및 통관 관련 법령과 물품과 관련 있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 「대외무역법」은 통상·산업정책을 위하여 물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법」에서는 통관 시 수입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음
 - 수입물품을 소관하는 개별 법령은 물품, 제조시설, 제조자, 판매자, 구매자 등이 구비 또는 준수해야 하는 기준, 사양,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음

- 수입요건은 「대외무역법」뿐 아니라 물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에서도 정하고 있어 그 규정이 방대하므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고 있음
 - 「대외무역법」에서는 해당 법에 따른 수입제한 물품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수출입공고」로 고시하고 있음
 - 또한 「대외무역법」은 개별 법령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수입요령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받아 「통합공고」로 공고하도록 함

가. 무역 및 통관 관련 법령

1)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대외무역법」은 특정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아닌 정책적 목적의 이행을 위한 수입요건을 정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음³⁰⁾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 생물자원의 보호
 -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 과학기술의 발전
 -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³¹⁾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 등의 수입 제한,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출입 공고」를 고시함³²⁾
- 해당 규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³³⁾ 구체적인 수입요령은 「수출입 공고」에서 정함
 - 수입제한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의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해야 함³⁴⁾
-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 등과 그 밖에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등의 수입은 승인이 면제됨³⁵⁾

30)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

3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32) 「수출입 공고」 제1조

33) 「대외무역법」 제11조 제2항

34) 「수출입 공고」 제6조 제1항

35) 「대외무역법」 제11조 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등
 -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 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밟아 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등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입하는 물품 등
 -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
 - 무상으로 수출하여 무상으로 수입하거나, 무상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등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따로 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등
 -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
-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등

〈표 Ⅲ-1〉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면제 대상

구분	수입승인 면제 대상
영 제19조 제1호에 따른 수입승인 면제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자 또는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입국하는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이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입국의 목적, 체류의 기간, 입국자의 직업 등의 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hr/>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그 입국의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표 Ⅲ-1〉의 계속

구분	수입승인 면제 대상
	<p>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개인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p> <p>우리나라에 온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으로서 입국 시에 반입하는 물품</p> <p>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계약자가 계약조건에 의하여 반입하는 업무용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확인을 받아 반입하는 물품</p> <p>정부의 초빙이나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사절단원의 업무용 물품</p>
영 제19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수입 승인면제	<p>조난선박의 수리 또는 구호에 필요한 비용과 해당 선박이 항해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그 선박의 적재물품으로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p> <p>긴급을 요하는 항공기의 부분품(항공용 유류 및 비상구급용품을 포함한다), 공항 내에서 항공기에 전용되는 지원장비의 부분품, 수리용품 및 수리용 원료를 구매 또는 임차함에 있어서 그 구매절차에 의하여는 적기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항공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항공법」 제112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p> <p>긴급을 요하는 국제통신시설의 수리용 부품과 기기를 구매 또는 임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적기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p> <p>긴급을 요하는 해난구조용품으로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적기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해난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p> <p>긴급을 요하는 견품으로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적기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p>
영 제19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수입 승인면제	<p>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유상으로 반입하는 경우 미화 5만달러 상당액(과세가격 기준) 이하의 물품</p> <p>상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 제조용 원료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p> <p>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입하는 물품</p> <p>수입된 물품이나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또는 수입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p> <p>수입물품의 하자보정기간 내에 동 물품의 유지보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해당 물품의 수출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p>

〈표 Ⅲ-1〉의 계속

구분	수입승인 면제 대상
영 제19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수입 승인면제	수출물품의 성능보장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한 물품으로 다시 반입하는 물품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에 공할 일부 외화획득용 원료로서 세관장이 해당 수출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무상으로 반입하는 라벨, 택 등 부자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주무부장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입하는 나용선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반입하는 임차항공기. 다만, 장래 소유권이 이전되는 국적취득조건부의 것을 제외한다.
	위탁가공구역에 의하여 수출된 원료의 잔량분으로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가 현지에서 사용한 후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치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외국상사의 지사나 출장소 등에 무상으로 송부된 사무용품, 소모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건설용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우리나라에서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직접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될 물품으로서 해당 운항사항업을 행하는 자(당해 사업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되어 오는 물품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소모성 자재 또는 시료로서 해당 수출물품의 성능, 시험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항공산업용으로 도입하는 중고 치공구	
그 밖에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영 제19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수입 승인면제	<p>무상으로 반출할 예정으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의 신문사, 통신사 또는 방송국의 특파원으로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자가 뉴스의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필름 또는 녹음테이프 2) 금속제 실린더, 컨테이너, 권사구 등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 사용되는 용기 또는 기구 3)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영화제작자가 반입하는 영화 촬영용 기계·기구로서 해당 영화촬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회 흥행업자의 흥행용 물품 5) 텔레비전 방송국이 텔레비전 방송을 목적으로 반입한 영화필름 6) 공사용(수리용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용의 기계 또는 기구

〈표 Ⅲ-1〉의 계속

구분	수입승인 면제 대상
영 제19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수입 승인면제	7)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 8)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 9) 산업설비수출의 이행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기계 또는 장치로서 한국기계공업 진흥회장이 추천하는 물품 10) 대학 및 연구기관에 외국으로부터 품질이나 성능검사 등을 위탁받아 반입하 는 검사의뢰 물품 및 검사장비
	무상으로 반출된 물품을 다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 1) 금속제 실린더, 컨테이너, 권사구 등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 사용되는 용기 또는 기구 2)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 3) 외국에서 영화(뉴스필름을 포함한다)를 촬영하기 위하여 영화제작자가 반출 한 영화촬영용의 기계·기구 4) 외국에서 개최된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된 물품으로서 반송되어 온 물품 5)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 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현지합작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 하여 반출한 시설기재, 원료,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그 밖에 그 사업에 관련하 여 사용한 물품 6)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 여 반출한 물품
영 제19조 제2호 마목에 따른 수입 승인면제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기업체가 「관세법」에 따 른 보세공장에서 가공할 것을 목적으로 무상 또는 계정 간의 이체방식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입하는 원료 및 동 시설보완용 부분품, 소모성 기자재 또는 시설재 (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영 제19조 제2호 바목에 따른 수입 승인 면제	국가원수에게 반입되는 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자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훈장, 기장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물품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군대, 군함 또는 공관으로부터 반입되는 공용물품 사원, 교회 등에 기증된 식전용품 및 예배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여 반입되는 물품

〈표 Ⅲ-1〉의 계속

구분	수입승인 면제 대상
영 제19조 제2호 바목에 따른 수입 승인 면제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된 급영품 및 「관세법」 제91조 제2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에 의하여 지정된 구호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어 직접 사회복지用に 공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 그 밖에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정한 시설에 표본, 참고품, 학술연구 또는 교육用に 직접 공하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되는 물품
	외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우호의 목적으로 기증되어 반입되는 물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해당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과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물품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발행하는 유네스코구본과 교환으로 송부되어 반입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통상대표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반입하는 공영물품 그 밖에 그 기관에 소속되는 외국공무원 및 그 가족이 반입하는 자용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설립자가 법인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만 해당한다)이 같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
	국제공동경기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단의 경기용 물품 및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반입하는 물품
영 제19조 제2호 사목에 따른 수입 승인면제	무상으로 반입하는 간행물,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사진 및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해상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침몰 또는 폐선된 경우에 그 외국가해자로부터 현물배상으로 제공받아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반입하는 선박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에 반입하는 해체 물품 및 장비품
	우리나라에서 출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로 인하여 다시 반입하는 물품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외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분리된 부분품(현지 수리 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선박용 또는 항공기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유골(유체를 포함한다)

〈표 Ⅲ-1〉의 계속

구분	수입승인 면제 대상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물품을 담보로 자금을 용자받은 수출입업자의 파산, 해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그 수출입업자에 의한 통관이 불능한 경우에 해당 외국환은행이 담보권 행사를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물품 1) 외항운송업자가 경상운항경비로 구입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된 식용품 및 서비스용품 2) 자기치료를 위한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추천한 물품. 다만, 일정한 치료주기가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최소 치료주기에 대한 소요량을 명기한 경우와 각 개인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2명 이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2천달러 이상의 경우라도 추천할 수 있다. 3) 운송사업자가 외국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식용품 및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기용품
	국제공동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연구기자재 또는 국제공동연구 결과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입 추천하는 물품
	시험·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한 물품
	신문사, 통신사 또는 방송국의 해외자사에서 구입·사용 후 내용연한이 경과된 방송·촬영장비 중 무상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반입목적 등의 사유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추천하는 물품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 한편 「대외무역법」은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수입요건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³⁶⁾ 이는 「통합공고」로 고시됨
- 「통합공고」는 다음 〈표 Ⅲ-2〉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별표 2에서 품목별 수입요령을 정하고 있음

36) 「대외무역법」 제12조

〈표 Ⅲ-2〉 「통합공고」의 적용 법령

법령		
약사법	소음·진동관리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 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건설기계관리법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식품위생법		
화학물질 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농약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종자산업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축산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방위사업법
계량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전파법	사료관리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자료: 「통합공고」 제3조 제1항

- 「통합공고」의 수입요령에 따른 물품은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으로부터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요건확인이란 수입요령에서 고시하고 있는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을 받는 것을 말함

- 다만 「통합공고」에 의한 요건확인물품이라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음³⁷⁾
-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통합공고」 제3조 제1항의 해당 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요건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요건이 면제되지 않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식물방역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곡관리법」
 -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유전자원법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 「폐기물 관리법」

37) 「통합공고」 제12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법」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위생용품 관리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이 요건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함³⁸⁾
 - 요건면제확인 신청 시에는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에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화약서, 요건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요건면제물품이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인 경우 수입자는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제출하고 통관해야 함³⁹⁾

2) 「관세법」

- 「관세법」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요건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고, 필요한 경우 요건의 구비 여부를 통관하는 때에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⁴⁰⁾
 - 수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증명하여야 함⁴¹⁾
- 통관을 할 때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함⁴²⁾

38) 「통합공고」 제13조

39) 「통합공고」 제24조

40)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는 물품의 수출입 금지에 관한 사항임

41) 「관세법」 제226조

- 공고는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입 물품의 통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함⁴³⁾
-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고시하고, 별표 2에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을 정하고 있음
 - 별표 2는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입요건으로 구성됨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식물방역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한정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제외함)
 - 「통신비밀보호법」
 -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연구·검사 용 시약은 제외)

42) 「관세법」 제226조 제2항

43)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별표 5의 세관장 확인 생략 대상법령 및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함

나. 물품 관련 개별 법령

- 수입요건은 물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에서도 정하고 있으며, 수입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령은 그 수가 매우 방대함
 - 이러한 법령을 통합하여 고시한 「통합공고」의 대상법령은 54개임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정한 세관장의 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관한 법령도 43개임
-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로 주요 구매하는 물품과 관련 있는 법령을 위주로 수입요건 규정을 살펴보고자 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의류, 가전·전자기기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음·식료품 및 「화장품법」의 화장품에 대한 수입요건을 살펴보고자 함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안전을 도모함⁴⁴⁾
-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함⁴⁵⁾

4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조

4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함⁴⁶⁾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 즉 안전관리가 이루어짐⁴⁷⁾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는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구분됨⁴⁸⁾
 -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함
 -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함
 -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함

〈표 Ⅲ-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제품안전관리

구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 및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 및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3 및 6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제외 ¹⁾ -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제외 ²⁾ - 1차전지 및 2차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제외 ³⁾		
절차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 안전인증서 발급	안전확인기관의 제품시험 → 안전확인 신고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직접 또는 3자의 제품시험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세관장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 (전기용품에 한함)

4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

4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4호

4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 내지 제7호

〈표 Ⅲ-3〉의 계속

구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관리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안전인증·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제품시험을 받아 안전인증·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	-

주: 1)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품목 중 비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
 2) 온열시트, 내비게이션 및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포함
 3) 전격살충기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포함
 자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내지 제6조, 제15조 내지 제16조, 제23조 내지 제24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안전관리대상물품이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⁴⁹⁾
 - 특히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안전관리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됨⁵⁰⁾
 -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⁵¹⁾
- 안전관리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장에게 면제확인을 신청해야 함⁵²⁾
 - 면제확인 신청 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면제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를 제출함
 -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면제확인서 및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함
- 한편 구매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물품을 증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으나⁵³⁾ 특정한 경우 구매대행이 가능함
 -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을 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과 같음⁵⁴⁾
 -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4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16조, 제24조

5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제14조

5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6

5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2조, 제24조

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 제19조 제2항

5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

- 이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제품 241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안전인증 또는 확인 표시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이 가능함⁵⁵⁾
 - 안전인증대상 제품 중 전기용품 14개 품목, 생활용품 3개 품목은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경우 구매대행을 할 수 없음
 -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15개 품목이 구매대행을 위해 안전확인표시가 필요하며, 생활용품은 안전확인표시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은 모든 제품이 확인표시 없이 구매대행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거나 구매대행을 중지하거나 금지명령 이행의 의무를 부담함⁵⁶⁾
 - 구매대행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함
 - 해당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항
 -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있는 경우)
 -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을 중지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 품질향상 도모,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⁵⁷⁾

55)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4>, 검색일자: 2024. 8. 20.

5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6조 내지 제37조

5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

-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함⁵⁸⁾
 -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을 말함⁵⁹⁾
 -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함⁶⁰⁾
 -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함⁶¹⁾
 -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함⁶²⁾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함⁶³⁾
 -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함⁶⁴⁾
- 영업자가⁶⁵⁾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함⁶⁶⁾
 -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 외의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에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수입식품 등의 사진 등을 첨부하여 통관장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함⁶⁷⁾
 -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수입 통관

5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59)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60) 「식품위생법」 제2조 제2호

61)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

62) 「식품위생법」 제2조 제5호

6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6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

65) 영업자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 제5호)

6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6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전에 통관장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함⁶⁸⁾

-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은 식품 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표 Ⅲ-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구분	수입신고
대상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절차	수입신고 → 검사(서류·현장·정밀·무작위표본)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세관장 확인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신고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등 -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등 -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제3호·제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영업소의 제조·가공시설에 부착·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 - 「관세법」 제239조 제1호에 따라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수입식품 등 -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원료 -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함) -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자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제30조, 별표 8의2; 「수입식품 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한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해 위해정보 게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지정,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제를 마련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⁶⁹⁾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음⁷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⁷¹⁾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 결과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⁷²⁾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⁷³⁾

3) 「화장품법」

-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⁷⁴⁾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함⁷⁵⁾

6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2

7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

7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4 제1항

7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4 제2항

7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5

74) 「화장품법」 제1조

75)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에 한하며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함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함⁷⁶⁾
 - 이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사항 등의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함⁷⁷⁾
 - 다만 수입대행형 거래 목적의 화장품 알선·수여 영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준수사항의 일부만이 해당됨⁷⁸⁾
- 화장품책임판매자는 화장품의 수입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거나 표준통관예정정보고를 하고 화장품을 수입해야 함⁷⁹⁾
 - 화장품책임판매자는 지난해의 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함
 - 다만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화장품책임판매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음
-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⁸⁰⁾
 - 기능성화장품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말함⁸¹⁾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76) 「화장품법」 제3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77) 「화장품법」 제5조 제2항
 78)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79) 「화장품법」 제5조 제5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80) 「화장품법」 제4조
 81) 「화장품법」 제2조 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얇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강한 햇빛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탈색을 포함)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함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함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함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함
-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탄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얇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표 III-5〉 「화장품법」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의무

구분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의무
대상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고자 하는 자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 및 의무 준수(수입대행은 일부) → 수입실적 보고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 → 품질검사 후 유통(수입대행은 제외)
세관장 확인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 또는 보고서 제출 후) 표준통관예정보고

자료: 「화장품법」 제3조, 제5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 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의 수입요건 면제

가.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의 수입요건 면제 근거

1) 수입요건 면제규정

- 「대외무역법」 및 개별 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 대상물품은 이를 구비하여 수입되어야 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입요건이 면제될 수 있음
 - 「대외무역법」과 개별 법령에서는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기도 함

- 특히 대부분의 법령에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구매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 구비가 면제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하여 직접 수입하는 해외직구물품은 판매용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수입요건 없이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먼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제한은 승인 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경우에 자가 사용을 위한 전자상거래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사유 중 하나로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을 정하고 있음⁸²⁾
 - 해당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해외직구물품이 해당하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됨
 -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 또한 「통합공고」에서도 해외직구물품이 포함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수입승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요건면제를 규정하고 있음⁸³⁾
 - 따라서 「통합공고」의 적용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 대상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해당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됨
- 해당 규정에 따라 요건면제를 받고자 하는 물품은 「통합공고」에서 정하는 요건면제 절차에 따라 요건면제 확인을 받아야 함
 -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와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요건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⁸⁴⁾
- 한편 「통합공고」의 요건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법령, 「통합공고」의 적용 법령이 아닌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개별 법령에 따라 요건면제가 결정됨
 - 「통합공고」의 요건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법령에는 주요 해외직구물품과 관련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이 있음⁸⁵⁾
- 즉 이러한 법령과 관련 있는 해외직구물품은 각 법령에서 요건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요건면제 절차에 따라 수입요건 없이 수입될 수 있음
 - 해당 법령에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요건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수입해야 함
- 예를 들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경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대의 물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면제하도록 함⁸⁶⁾
 - 이에 따라 자가사용을 위해 해외직구하는 가전제품, 의류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면제받고 수입할 수 있음

83) 「통합공고」 제12조 제1항 제3호

84) 「통합공고」 제13조

85) 「통합공고」 제12조 제2항

8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 별표 16

- 안전관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장에게 면제확인을 신청해야 함⁸⁷⁾
- 반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자가소비용의 특송화물 등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요건면제와는 구분이 필요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는 영업자가 판매나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함⁸⁸⁾
 - 따라서 자가사용을 위한 수입식품 등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임
- 수입요건 면제는 원칙적으로 수입요건의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는 경우이며, 수입요건 비대상은 수입요건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함
 - 따라서 수입요건 면제는 면제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수입요건 비대상은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2) 자가사용 인정기준

- 해외직구물품은 대부분 자가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입요건이 면제되고 있으므로 수입요건 면제 여부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짐
 - 수입요건 관련 법령은 해외직구물품을 직접적으로 요건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자가사용을 위한 물품에 대한 요건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대외무역법」과 「통합공고」의 수입승인 또는 수입요건 면제 사유에서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승인 또는 수입요건이 면제될 수 있음

8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2조, 제24조

8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이와 관련하여 세관장은 요건면제를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세법」에 따른 소액면세를 위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 해당 기준에서 제시한 범위 내의 물품은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대외무역법」 또는 「통합공고」에 따라 수입승인 또는 수입요건이 면제될 수 있음

〈표 Ⅲ-6〉 소액면세 자가사용 인정 기준

종류	품명	자가사용 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 수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인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한약재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합 300g 300g 검역 후 150g 각 3kg	• 녹용은 검역 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인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 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 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의약품		총 6병(6병 초과인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 (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표 II-6〉의 계속

종류	품명	자가사용 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膏,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雞骨, 熊膽, 熊膽粉, 雞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青春寶, 強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약사법 대상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야생동물 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 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1병(1ℓ 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250g 60ml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 허용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자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 이와는 별도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 등은 요건면제 대상을 정하면서 자가사용의 기준을 명시하기도 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은 1대의 제품을 자가사용으로 인정하여 안전관리 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함⁸⁹⁾

8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6;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나.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 실태

- 해외직구물품은 대부분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됨에 따라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수입되며, 소액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되므로 요건면제에 대한 확인 또한 받지 않음
 - 15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물품은 소액면세가 적용되어 관세가 면제되고, 특송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우편의 경우 현장면세로 통관되어 수입신고가 필요 없음
- 따라서 해외직구물품이 국내법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기준, 절차, 사양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외직구물품이 소비자 건강이나 국민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인천본부세관은 2024년 4월 7일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함⁹⁰⁾
 - 접촉성 금속 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 대상이지만, 해외직구물품은 이에 대한 요건구비 없이 수입될 수 있음
- 또한 2024년 4월 8일 서울시는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검사결과 8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힘⁹¹⁾
 -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안전인증기관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주 해외 플랫폼 판매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 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다음 <표 III-7>과 같음

90) 관세청, 「알리·테무서 구입한 내 귀걸이가 혹시 카드뮴 덩어리?」, 보도자료, 2024. 4. 7.

91) 서울특별시, 「유해물질 범벅 해외직구 공습...서울시, 소비자 보호 나선다」, 보도자료, 2024. 4. 8.

〈표 Ⅲ-7〉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물품 안전성검사

보도일자	품목	검사대상	검사결과
'24. 4. 26.	기타 어린이제품	22개: 신발 장식품 16종, 키링, 어린이용 욕조, 어린이용 칫솔, 어린이용 피크닉의자,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어린이용 수영모자	11개 제품 부적합: 신발 장식품 (7개), 어린이용 욕조, 어린이용 피크닉의자,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어린이용 수영모자
'24. 5. 9.	완구·학용품	9개: 완구 5개 제품(슬라임 2종, 스퀴즈토이, 피규어, 자동차 변신로봇) 학용품 4개 제품(노트, 샤프, 필통 2종)	5개 제품 부적합: 샤프, 필통, 슬라임 2종, 피규어
'24. 5. 16.	어린이용 장신구	7개: 어린이용 머리띠 2종, 어린이용 시계 2종, 어린이용 핀 2종, 어린이용 목걸이	2개 제품 부적합: 어린이용 머리띠, 어린이용 시계
'24. 5. 23.	어린이용 장신구	7개: 어린이용 목걸이 2종, 어린이용 헤어밴드 2종, 어린이용 시계, 어린이용 헤어핀, 어린이용 팔찌	2개 제품 부적합: 어린이용 목걸이, 어린이용 시계
'24. 5. 28.	어린이용 가죽제품	8개: 어린이용 가죽가방 4종, 어린이용 가죽신발 3종, 어린이용 가죽벨트	7개 제품 부적합: 어린이용 가죽가방 4종, 어린이용 가죽신발 2종, 어린이용 가죽벨트
'24. 6. 4.	식품용기	58개: 냄비, 그릇, 도시락, 컵 등	1개 제품 부적합: 법랑 그릇
'24. 6. 13.	완구	6개: 스퀴즈토이, 피젯토이, 스티커북, LCD 보드, 자석완구, 공룡발굴완구	2개 제품 부적합: 스티커북, 공룡발굴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5개: 유아용 의류	부적합 제품 없음
'24. 6. 20.	위생용품	95개: 일회용 컵 29종, 일회용 빨대 31종, 일회용 냅킨 25종, 일회용 면봉 10종	9개 제품 부적합: 일회용 빨대 3종, 일회용 면봉 6종
'24. 7. 4.	아동용 섬유제품	10개: 운동화, 장화, 양말, 모자, 가방 2종, 앞치마 3종, 의류 1종	5개 제품 부적합: 장화, 모자, 가방 2종, 의류
	유아용 섬유제품	2개: 유아용 의류 2종	1개 제품 부적합: 유아용 의류
'24. 7. 18.	식품용기	140개: 법랑 등	5개 제품 부적합: 법랑 5종
	화장품	89개: 립스틱, 블러셔, 네일제품 등	14개 제품 부적합: 립스틱 3종, 블러셔 4종, 네일제품 4종, 파운데이션 3종
	의류	59개: 속옷 등	1개 제품 부적합: 속옷

〈표 Ⅲ-7〉의 계속

보도일자	품목	검사대상	검사결과
'24. 7. 18.	위생용품	42개	부적합 제품 없음
'24. 8. 1.	어린이용 계절상품	25개: 어린이용 물안경 4종, 어린이용 튜브 3종, 비치볼 2종, 수영복 4종, 래쉬가드 4종, 수영모 4종, 아쿠아슈즈 4종	7개 제품 부적합: 어린이용 튜브 3종, 비치볼, 수영복 2종, 아쿠아슈즈
'24. 8. 14.	식품용기	94개: 냄비 등	2개 제품 부적합: 알루미늄 냄비
	화장품	13개: 네일제품 등	2개 제품 부적합: 네일제품 1종
	잡화	28개: 샌들, 모자	7개 제품 부적합: 샌들 4종, 모자 3종
	위생용품	9개	부적합 제품 없음

자료: 서울특별시, 각 보도일자 보도자료

- 또한 환경부도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58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하여 69개 물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함⁹²⁾
 - 생활화학제품 20개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 톨루엔 등의 함유 금지 또는 제한물질이 검출되었음
 - 49개 금속장신구에서는 카드뮴, 납이 함량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는 부적합 물품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하였음⁹³⁾
 - 환경부는 이들 물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물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임

92) 환경부,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69개 국내 유통 차단」, 보도자료, 2024. 9. 19.

93) 환경부(2024. 9. 19.)

다.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에 대한 대책 현황

- 해외직구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문제,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4년 5월 16일 해외직구 종합대책을 발표함
 - 14개의 관계부처가⁹⁴⁾ 참여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의 검토를 통해 마련된 대책은 해외직구 소비자의 안전보호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방향으로 추진됨⁹⁵⁾
- 이러한 종합대책에는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비자 안전 및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 해당 방안은 ① 위해제품 관리 강화, ②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③ 통관 시스템 개선으로 구분됨
- 첫 번째로 위해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성이 확인된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이 2024년 연내로 추진될 예정임⁹⁶⁾
 -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품 등은 유해성분이 포함될 우려가 있으나 해외직구 시 별도의 검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포함한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의약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임
- 다음으로 해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해외직구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됨⁹⁷⁾
 -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해외직구 관련 사이트를 통합하여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

94)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5) 관계부처 합동,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2024. 5. 16. p. 2

96) 관계부처 합동(2024. 5. 16.), p. 6

97) 관계부처 합동(2024. 5. 16.), pp. 11~12

- 성을 제고하고, 위해물품 관련 정보 및 분쟁 사례 등을 제공함
 - 해외 플랫폼은 국내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 법적 제재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등의 보완조치로서 해외 플랫폼과의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고,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함
- 이러한 대책에 대한 조치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8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⁹⁸⁾
-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등의 처리 이행,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관련 법에 따른 자료·물건의 제출, 문서의 송달 등을 대리함
 -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 결제를 도입하고, 의결 이행을 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

〈표 III-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조항	조문
제20조의4 (국내대리인의 지정)	<p>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이용자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 제2항 제8호 및 제5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 불만 등의 처리 이행 2. 제20조 제3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료·물건의 제출 등 4.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문서의 송달

98) 권중일, 「공정위, 알리·테무 등 해외 직구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법제화…소비자보호 강화」, 『세정일보』, 2024. 8. 19.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420>, 검색일자: 2024. 8. 23.)

〈표 Ⅲ-8〉의 계속

조항	조문
	<p>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p>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p>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p> <p>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이용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⑦ 제1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32조(시정조치 등)	<p>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중략) ---제20조의3, 제20조의4--- (중략) ---을 위반하는 행위
제45조(과태료)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20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3. 제20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제32조의2 (동의를결)	<p>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이하 이 조부터 제32조의3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32조의3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p>

〈표 Ⅲ-8〉의 계속

조항	조문
	<p>동의를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p> <p>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 침해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p>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p> <p>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p>
제32조의3 (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마지막으로 정부는 위해제품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관검사 강화를 위한 인력·전문성을 보강할 예정임
- 위해제품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제품 모델, 규격 등의 통관서식의 기재 항목을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온라인 플랫폼 주문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위해제품 반입 차단에 활용 가능한 전용 통관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임

- 물품검사 및 통관심사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해외직구물품의 수입검사 및 성분분석 확대를 추진함

-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된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발표함⁹⁹⁾
 -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를 위한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을 기존의 전자상거래물품에서 전자상거래물품 중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체화하여 특별통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¹⁰⁰⁾
 - 특별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은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 신고, 물품검사 등이 가능하며, 이러한 방법이 탁송품·우편물의 수출입신고 방법보다 우선 적용됨

- 또한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세청 또는 세관에 등록하도록 함¹⁰¹⁾
 - 등록대상은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임
 - 기존의 영업등록 의무대상이었던 구매대행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전자상거래업체 등록대상으로 변경됨

- 관세청장은 관세청 또한 세관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에게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¹⁰²⁾
 - 거래정보는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요청할 수 있음

99) 기획재정부(2024. 7. 25.), pp. 102~104

100) 기획재정부(2024. 7. 25.), p. 102

101) 기획재정부(2024. 7. 25.), p. 103

102) 기획재정부(2024. 7. 25.), p. 104

IV. 해외직구 반입 위해물품 관리를 위한 수입요건 면제규정의 활용

1.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의 관리 방향

가. 소비자 후생과의 균형

- 해외직구가 급격히 성장한 요인은 가격 경쟁력, 선택의 다양성 등에서 국내물품보다 우위를 보이는 해외직구물품이 많기 때문임
 - 해외직구물품은 저렴한 인건비,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을 바탕으로 비교적 저가로 공급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물품을 소비자가 직접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무역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해외직구물품은 의류,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위해물품에 대한 대책에는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과 소비자의 후생 간의 균형이 필요함
 - 해외직구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은 해치지 않으면서 위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

전 및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예를 들어 자가사용을 위한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면 소비자가 누리던 해외직구의 혜택은 감소하게 됨
 - 수입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인해 해외직구물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
 - 또한 해외직구물품의 판매자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물품의 폭도 줄게 됨

- 또한 수입요건을 면제받은 모든 해외직구물품이 위해물품이 아니며, 위해물품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수입요건의 면제는 수입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일 뿐 수입요건을 불충족했다는 의미가 아님

- 따라서 자가사용을 위한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요건면제를 유지하되 요건면제 절차나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해외직구물품에 수입요건 구비를 강제하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 수입요건 면제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나. 실효성의 확보

-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해물품의 모든 거래정보를 파악해야 함
 - 해외직구물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판매자에 의해 소액·소량으로 많은 구매자에게 판매되므로 위해물품의 모든 거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움

- 위해물품에 대한 모든 거래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관리방안이 시행된다면 해당 방안의 목적 달성은 보장될 수 없음
 - 위해물품이 판매되는 특정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경로에 대해 위해물품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또한 위해물품의 구매자를 추적하지 못한다면 위해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음

- 따라서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의 관리방안은 관련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의무적 협조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위해물품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 신고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면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반면 관리방안에 따라 당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등을 의무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의도적인 정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협조사항을 수입통관 절차에 포함시킨다면 고의적이지 않은 정보의 누락 또한 발생하지 않음
 - 해외직구물품은 국내에 반입되기 위해서 반드시 물리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수입통관을 거쳐야 함
 - 만약 관세선을 통과하여 수입통관이 되는 시점에 당사자에게 특정 협조를 요청한다면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해외직구물품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 따라서 자가사용으로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관리 대안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해외직구물품은 국내 법령에 따른 기준, 사양, 절차 등의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안전한 물품으로 볼 수 없음
 - 그러므로 위해물품 관리방안의 적용대상에 요건면제 해외직구물품이 포함돼야 하며, 추후 위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수입통관 시 확보한 정보가 활용돼야 함

다. 소비자 인식 제고

- 해외직구물품은 대부분 소비재로서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원칙적으로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자가사용되는 경우 수입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건구비 대상이 아님
 - 의류,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건강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은 「화장품법」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수입요건을 정하고 있음

- 또한 해외직구물품은 소액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 관세가 면제되고, 수입신고 없이 통관됨
 - 2023년 수입건수 기준으로 특송으로 운송된 해외직구물품의 약 74%가 목록통관의 형태로 관세 부과 및 수입신고 없이 수입됨

- 이와 같이 소비자는 별도의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외직구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물품 구매와 해외직구의 차이를 인식하기가 어려움
 - 특히 해외 플랫폼이 우리나라와 근접한 국가에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배송기간도 짧아 국내물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즉,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외직구물품이 국내물품과 마찬가지로 국내 법령에 따른 기준, 절차 등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국내물품과는 다르게 이러한 요건을 면제받았는지 등을 인지하지 못함
 - 따라서 수입요건이 면제되거나 필요 없는 해외직구물품이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수입요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KC 인증을 받은 물품은¹⁰³⁾ 인증정보를, 개별법에 따라 KC 인증이 면제된 품목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¹⁰⁴⁾

- KC 인증이 면제된 경우 면제되는 인증의 종류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또한 식품, 주방용품 등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함¹⁰⁵⁾
- 그러나 이러한 정보제공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여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
- KC 인증면제에 대한 정보를 그 인증의 종류와 사유와 함께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해당 물품의 위해물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기 어려움
- 따라서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물품의 수입요건에 관한 정보를 단순히 표시 및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관련 사항을 확인 또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해외직구물품의 수입요건이 면제된 경우 국내 법령에 따른 기준 등의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위험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제공하도록 해야 함

2. 위해물품 관리를 위한 수입요건 면제규정의 활용

가. 요건면제의 확인

- 「통합공고」에서는 해당 고시에 따라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에게 요건면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¹⁰⁶⁾
-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 이외인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요건 면제수

10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을 받은 품목 등은 KC마크를 표시해야 함

1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II-6

1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III-1

106) 「통합공고」 제13조 제2항

입확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건면제확인 신청을 해야 함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 요건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또한 요건면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도 요건면제 절차를 정하고 있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관리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업자에게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¹⁰⁷⁾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연구·개발, 전시 등 안전관리 면제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 이와 같은 요건면제 절차는 자가사용을 위한 해외직구물품의 수입요건의 면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

- 「통합공고」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요건면제 확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외직구물품이 요건면제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음

□ 「통합공고」는 요건면제 확인신청을 요건면제 사유과 수출용인 경우와 수출용 이외인 경우로 구분하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은 수출용 이외인 경우에 해당됨

- 「통합공고」에서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을 거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¹⁰⁸⁾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통합공고」의 적용 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 중 하

10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2조, 제24조

108) 「통합공고」 제12조 제1항

나에 포함되어 수입요건이 면제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연구·개발, 전시 등을 위해 수입하는 안전관리 대상에 대해 요건면제 확인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상에는 자가사용 물품이 포함됨¹⁰⁹⁾
 - 안전관리 면제를 위한 확인이 필요한 연구·개발, 전시 등이 목적인 수입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안전관리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됨¹¹⁰⁾
 -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¹¹¹⁾
 -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여 안전관리 면제의 확인이 필요함

- 이와 같이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은 요건면제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통관 시 수입신고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므로 요건면제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일반적인 수입신고로 통관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항목에 요건면제 확인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요건면제 절차 이행을 확인하고 있음

- 따라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면제 절차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해외직구물품에 대하여 요건면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건면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당국이 요건면제 물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소비자는 요건면제 절차를 이행하면서 해외직구물품이 수입요건 대상이지만 이를 면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음
 - 요건면제 절차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해외직구물품의 요건면제 사실과 사유를 확인

10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16조, 제24조

1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제14조

1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6

함으로써 해외직구물품의 사후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음

- 자가사용을 이유로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해외직구물품은 이러한 방안을 통해 재판 매를 예방할 수 있음

- 더불어 요건면제확인 신청서 등에 국내 법령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소비자 안전 및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소비자가 해외직구물품의 요건면제 사실과 그 의미를 알지 못하여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

- 이러한 요건면제 절차를 해외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때에 확인하도록 한다면 소비자가 요건면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외직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즉 소비자가 해외직구물품의 위해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여 해외직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후생과 소비자 안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소비자가 요건면제의 사실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해외직구한 경우라도 해당 물품에 대한 피해가 소비자의 책임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함
 - 소비자의 요건면제 절차의 이행은 물품의 수입요건 면제사항에 대한 인지로서 기능하는 것이고 면제 책임에 대한 확약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함

- 한편 소비자가 요건면제의 절차를 이행한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요건면제확인 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소비자 구제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해외 플랫폼 판매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또는 소비자의 피해 신고 등을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물품의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야 함

-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위해물품의 구매자 추적이 어려웠으나 요건면제 절차를 활용한다면 거래정보를 미리 확보할 수 있음
 - 요건면제 확인을 통해 확보한 거래정보에 따라 위해물품의 구매자를 추적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그러나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요건면제 절차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에 앞서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
 - 현재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해외직구물품은 요건면제 절차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수입요건 대상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통합공고」와 개별 법령에서 요건면제 절차를 각각 정하고 있는 물품의 경우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 간의 관계 정리도 필요함
 -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이 「통합공고」와 개별 법령에서는 수입요건이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각 법령에서는 요건면제 절차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 해당 물품의 요건면제 절차는 「통합공고」를 따라야 하는지 또는 개별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각 법령 간의 우선순위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나. 요건면제 기준의 강화

- 해외직구물품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되기 위해서는 판매나 유통용이 아니라 자가사용을 위한 것이어야 함
 - 「대외무역법」과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 대상 중 해외직구물품이 해당하는 사유에는 자가사용을 위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개별 법령 또한 판매 또는 대여용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물품의 가격, 수량 등을 고려하여 자가사용을 위한 물품으로 인정만 된다면 다른 기준이나 조건 없이 해외직구물품은 수입요건이 면제됨
 -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소액물품의 면세를 위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물품의 경우 세관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요건이 면제된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수입요건과 관련하여 판매자나 구매자, 중개자가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는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정보를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관세청장이 필요한 경우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상황에 대한 규정이지 판매자 등에 대한 의무에 대한 규정이 아님

-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당국이 해외직구물품의 거래정보를 상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 피해 방지나 구제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위해물품의 정보나 그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 해당 물품의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추적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함
 - 그러나 거래정보를 관련 당국이 적시에 제공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가 어려워짐

-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에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의 신설, 거래정보 요청에 관한 규정 개정이 포함되었으나 이 역시 위해물품 관리에는 미흡함
 -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된 업체에게 관세청장이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시점을 확대하였으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님

- 따라서 수입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 없이 수입된 요건면제 물품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요건면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요건면제 물품이 수입통관 후 위해물품으로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의무를 요건면제 기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특히 해외직구물품의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련 당국에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이렇게 제공되는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당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를 파악

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세관당국의 해외직구물품 거래정보 확보는 중국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이며, 해관과 네트워크가 연결된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면제함
 - 중국 해관은 해외직구물품을 세관 관리감독 코드로 거래를 구분하고 특정 세관 관리감독 코드에 대해 수입요건을 면제함
- 중국 해관에서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해외직구물품은 ‘온라인 구매 보세수입’ 및 ‘직구매 수입’이라는 세관 관리감독 코드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임¹¹²⁾
 - 직구매 수입은 전자상거래 구매물품이 해외에서 바로 배송되며, 온라인 구매 보세수입 물품은 중국 내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주문 후 소비자에게 배송됨¹¹³⁾
- 이러한 세관 관리감독 코드는 해관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하여 거래(주문), 지불(결제), 물류(운송) 전자정보를 3단 비교할 수 있어야 함¹¹⁴⁾
 - 해관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출입국 택배운영자·우정기업은 전자상거래업체·결제업체의 의뢰를 받아 법적 책임을 지고 해관에 거래, 지불 등의 전자정보를 전송할 것을 약속해야 함
- 즉, 온라인 구매 보세수입, 직구매 수입에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업체, 결제·물류업체는 전자정보를 실시간으로 해관에 전송해야 함¹¹⁵⁾
 - 실시간 물류추적 등 정보공유 인터페이스를 오픈하여 해관의 위험 예방·통제 업무에 대한 정보지원을 해야 함

112)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규제개선 관련 업무통지」 제3조: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물품관련 감독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 제4조

113) 이홍숙, 「중국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보세구역·FTZ에서의 B2C 수입 허용 요구 관련 국회 토론회, 윤상현 의원실, 국회의원회관, 2022. 12. 20., p. 5

114)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규제개선 관련 업무통지」 제1조

115)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물품관련 감독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 제26조

- 이에 따라 요건이 면제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거래, 대금지급, 물류 등의 전자정보는 신고 전에 해관에 전송됨¹¹⁶⁾
 -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업체의 국내대리인, 결제·물류업체는 관련 정보를 세관에 전송하고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짐

- 우리나라도 중국과 유사하게 세관당국이 해외직구물품의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특히 중국해관은 거래정보뿐 아니라 결제, 운송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어 해외직구물품의 거래당사자, 유통경로 등을 추적·분석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수입요건을 면제대상의 조건으로 거래정보의 제공을 추가한다면 수입요건의 면제와 수입요건 비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화장품법」은 판매업자에게 수입요건을 요구하므로 자가사용을 위한 화장품은 수입요건의 대상이 아님
 - 그러나 자가사용을 위한 화장품 수입의 취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대상인지 「화장품법」의 수입요건 비대상인지 구분이 어려움

- 현재 해외직구물품은 수입요건 면제 대상과 수입요건 비대상 모두 별도의 절차나 기준이 요구되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았음
 - 판매용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법령의 적용 물품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된다면 수입요건의 대상이 아님
 - 이 경우 자가사용으로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물품과 동일하게 자가사용 인정 여부만이 수입요건 구비가 요구되지 않는 조건임
 - 즉 수입요건 비대상과 면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동일하고, 그에 따른 절차 또한 없으므로 그 구분이 필요 없었음

116)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물품관련 감독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 제6조

- 그러나 수입요건의 면제대상에 정확히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요건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하도록 한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자가사용을 위한 화장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만 된다면 「화장품법」의 수입요건 대상이 아니므로 요건면제 절차 및 기준의 충족이 요구되지 않아야 함

3. 수입요건 면제규정 활용을 위한 개선사항

- 수입요건 면제규정을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의 관리를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미비점이나 해석의 모호함 등을 정비해야 함
- 수입요건 면제대상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이나 기준의 충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함

가. 중복·상충되는 요건면제 규정 정리

- 「통합공고」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통합하여 공고하므로 「통합공고」와 개별 법령의 규정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 「통합공고」는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¹¹⁷⁾
- 「통합공고」는 총칙과 물품별 수출입 요령으로 구성되며, 총칙은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사항을, 물품별 수출입 요령은 각 물품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함
- 따라서 총칙은 개별 법령과 별도로 「통합공고」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며, 물품별 수출입 요령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됨

117) 「통합공고」 제1조

- 「통합공고」의 총칙은 「통합공고」의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과 요건면제 규정으로 구성됨
 - 일반규정은 「통합공고」의 목적, 적용 법령,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이, 요건면제 규정은 요건면제 대상, 절차, 사후관리 등이 포함됨

- 특히 요건면제 규정은 「통합공고」에서 모든 물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개별 법령에서도 정하고 있기도 함
 - 가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은 요건면제에 관한 사항을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통합공고」의 요건면제 규정과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면제 규정의 내용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통합공고」와 개별 법령의 요건면제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물품은 어떤 법령을 따라 요건면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통합공고」의 요건면제 대상에는 「통합공고」의 적용 법령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상충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음
 - 「통합공고」는 요건면제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고, 면제 사유를 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 또한 요건면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해당 절차가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통합공고」는 요건면제 조항이 제외되는 법령을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의 대상물품의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요건면제 제외 법령이 적용되는 물품은 「통합공고」의 요건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외 법령에서 요건면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 예를 들어 「전파법」은 요건면제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개인이 사용하는 기자재는 요건면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¹⁸⁾

-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은 신청서, 면제 사유 증명 서류, 품명 및 수량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면제를 신청해야 함
 -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해외직구되는 개인용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통합공고」의 요건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전파법」에 따라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그 판단기준이 필요함
 - 개인 사용 목적의 방송통신기자재는 「통합공고」의 요건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전파법」의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도 포함되므로 적용 법령의 결정이 필요함
- 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경우 「통합공고」의 요건면제 조항의 적용 제외 법령이므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우선 적용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면제 절차와 「통합공고」의 요건면제 절차가 상이하지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절차를 따르면 됨
-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하여 요건면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복·상충되는 규정 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중복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법령 간의 관계를 정립한 후 우선 적용되는 법령에 위해물품 관리를 위한 요건면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통합공고」가 각 법령을 취합하고 있으므로 「통합공고」의 요건면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집행의 효율성, 이행의 편의성 등에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통합공고」 요건면제 규정의 적용 제외 법령의 경우 그 제외의 취지를 고려하여 「통합공고」의 요건면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통관절차와 요건면제 절차의 일치

-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요건면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요건면제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또한 필요함
 - 요건면제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
- 해외직구물품은 통관이라는 절차를 통해 절차적·물리적 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관절차에 요건면제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삽입한다면 절차의 불이행 시 통관을 제한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실질적 통제가 가능함
- 일반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때에 면제 절차를 이행한 후 수취한 면제 확인서에 관한 사항을 수입신고 시 기재하도록 함
 - 예를 들어 「전파법」의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는 수입신고 항목에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서의 내용을 기재해야 함
- 그러나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대부분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신고 없이 통관되므로 일반 수입물품 같이 요건면제 절차의 이행을 확인할 수 없음
 - 통관목록에는 거래형태나 용도 등 자가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만 수입요건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은 없음
- 따라서 요건면제 절차 이행의 확인을 위하여 요건이 면제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배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을 정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¹¹⁹⁾

119)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 목록통관 배제 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식품 등 수입 요건이 필요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모든 수입요건 대상물품으로 확대할 수 있음
 - 수입요건 대상에는 요건면제 물품도 포함되며, 「통합공고」에 요건확인물품과 요건면제물품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배제 물품에 포함시킬 수 있음

- EU의 경우 해외직구물품에 대하여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물품이 EU 관세영역에 반입되기 전에 반입약식신고(Entry Summary Declaration)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반입약식신고에는 보안 및 안전을 위한 위험분석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며, 세관당국은 이를 근거로 수행한 위험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함¹²⁰⁾

- EU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반입약식신고 적용 대상과 제공정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반입약식신고를 의무화 함
 - 우편, 특송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은 2021년 3월 15일부터 반입약식신고를 위한 최소 정보를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에 제출해야 함¹²¹⁾
 - 해외직구물품이 우편, 특송, 일반항공으로 수입되는 경우 2023년 3월 1일부터 위험관리와 관련된 완전한 반입약식신고 사항을 제출해야 함¹²²⁾

- 우리나라도 EU를 참고하여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해외직구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다만 EU는 모든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이행을 통해 소액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면세를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120) UCC 제127조 내지 제128조

121) EU TAXUD, "Import Control System 2 - Release 1,"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security/import-control-system-2-ics2-0/import-control-system-2-release-1_en, 검색일자: 2024. 9. 26.

122) EU TAXUD, "Import Control System 2 - Release 2,"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security/import-control-system-2-ics2-0/import-control-system-2-release-2_en, 검색일자: 2024. 9. 26.

- EU는 2021년 7월부터 소액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하였으며, 2028년 3월부터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할 예정임

- 따라서 우리나라는 요건대상인 물품에 한하여 요건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목록통관을 배제하여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해외직구물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위해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요건대상에 대한 목록통관 배제를 고려할 수 있으며, 모든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다. 요건면제 대상과 요건 비대상 구분

-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물품과 수입요건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관련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수입요건 면제물품과 수입요건 비대상 물품을 구분하지 않고 수입통관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요건면제 물품은 원칙적으로 요건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요건 구비를 요구하지 않는 물품이며, 요건 비대상 물품은 요건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님
- 따라서 요건면제 물품은 요건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요건 비대상 물품은 이러한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만약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요건면제 확인을 의무화한다면 요건면제 대상과 요건 비대상의 구분은 더욱 중요해짐
- 요건면제 대상은 요건면제 확인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반면 요건 비대상은 이러한 확인이 필요없기 때문임
- 요건면제 대상은 「통합공고」나 개별 법령에서 그 사유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만, 요건 비대상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요건 비대상은 요건 대상이 아닌 물품을 말하므로 요건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요건 비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은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사항이지만, 판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즉,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수입요건의 대상이 아닌지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반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판매나 영업 목적의 식품 등의 수입에 대해 수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 요건 비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국제우편물, 국제특송화물 등으로서 자가 소비용으로 인정되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공고」의 요건면제품목에 자가사용 전자상거래 구매물품이 포함되므로 모든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은 요건면제 대상이라고 오인될 수 있음
- 요건면제품목은 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이라도 그 요건 및 절차가 필요 없는 물품을 말하므로 요건 비대상은 요건면제 규정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님
- 자가사용으로 수입요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대상 물품의 경우 요건면제 여부와 관계 없이 이미 수입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임
- 이에 따라 자가사용물품을 수입요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법령의 경우 해당 법령을 「통합공고」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화장품법」 등의 법령에 따른 물품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수입요건이 요구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여 요건면제 대상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
- 「통합공고」에서는 용도기준으로 요건대상 품목이 결정되는 경우 당해 용도 외의 물품은 요건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¹²³⁾

- 즉 판매·영업·유통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수입요건의 대상인 경우 해당 용도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물품은 수입요건 비대상임
- 다만 요건확인 대상물품의 지정이 용도기준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¹²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처의 장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요건 대상 여부가 용도기준인지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함
-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통합공고」의 적용 법령이 자가사용 물품을 요건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정을 「통합공고」에 고시할 수 있음
 - 자가사용 물품이 요건 비대상인 법령을 규정한다면 해당 법령 외의 법령이 적용되는 해외직구물품은 요건면제 대상이며, 요건 비대상과 구분이 명확해 짐
 - 자가사용 물품을 요건 비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수입요건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물품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사유 중 하나인 자가사용 전자상거래 구매물품에 해당하여 「통합공고」에 따른 요건면제 대상임

라.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확대

-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리를 위한 요건면제 확인절차의 활용을 위해서는 요건면제의 조건인 자가사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함
 - 자가사용 인정기준 범위 내의 수량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으로 인정하여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면제확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법령의 적용 물품에 대한 요건 비대상 명시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자가사용 기준이 필요한

123) 「통합공고」 제6조 제1항

124) 「통합공고」 제6조 제1항

- 요건 비대상의 경우 또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범위 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으로서 수입요건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현재 요건면제 등에는 소액물품의 면세를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적용되지만, 규정되어 있는 품목이 한정적임
 -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세관장이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요건면제 및 비대상에 해당하는 자가사용 물품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품목의 확대가 필요함
 -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세관장이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신속한 요건면제 확인과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해외직구물품 중 수입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비중이 큰 품목을 위주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 관세청, 「알리·테무서 구입한 내 귀걸이가 혹시 카드뮴 덩어리?」, 보도자료, 2024. 4. 7.
- 관계부처 합동,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2024. 5. 16.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 7. 25.
- 서울특별시, 「유해물질 범벅 해외직구 공습…서울시, 소비자 보호 나선다」, 보도자료, 2024. 4. 8.
- 이홍숙, 「중국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보세구역·FTZ에서의 B2C 수입 허용 요구 관련 국회 토론회, 윤상현 의원실, 국회의원회관, 2022. 12. 20.
- 환경부,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69개 국내 유통 차단」, 보도자료, 2024. 9. 19.
- 권종일, 「공정위, 알리·테무 등 해외 직구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법제화…소비자보호 강화」, 『세정일보』, 2024. 8. 19.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420>, 검색일자: 2024. 8. 23.
- 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05, 검색일자: 2024. 5. 16.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E1009&conn_path=I3, 검색일자: 2024. 7. 17.
-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7b5ilzmSn7AGCQwoWIUNGDApelIJsBYT84h2k4g_.node11?idx_cd=2457#, 검색일자: 2024. 5. 16.

EU TAXUD, “Import Control System 2 - Release 1,”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security/import-control-system-2-ics2-0/import-control-system-2-release-1_en, 검색일자: 2024. 9. 26.

_____, “Import Control System 2 - Release 2,”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security/import-control-system-2-ics2-0/import-control-system-2-release-2_en, 검색일자: 2024. 9. 26.

관세연구 24-01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 관리를 위한
수입요건 면제규정의 활용방안

발행 2024년 10월 31일

저자 정다운 · 이재선

발행인 이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세일포커스(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ISBN 979-11-6655-302-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관세연구 24-01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 관리를 위한 수입요건 면제규정의 활용방안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